

[국회 토론회]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16년 9월 5일(월) 오후 2: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사회 정춘숙 의원

국회 연구단체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 토론회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16년 9월 5일(월) 14:30

장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주최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목 차

프로그램	03
축사 정춘숙, 권미혁, 김삼화 의원 (공동대표)	04
발제문 1.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진경	09
발제문 2.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법적 규제 김수연	37
토론문 1. 아동학대·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처벌 강화해야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도 신고의무 기관으로 이현숙	69
토론문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채팅앱의 규제 : 기술적 관점 이해영	77
토론문 3. 온라인 청소년 성범죄 피해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한명호	83
토론문 4. 채팅앱 운영자 책임성 강화 필요 김성벽	91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30-14:50	국민의례
	축사 (공동대표 정춘숙 · 권미혁 · 김삼화 의원)
사회자: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14:50-16:30	주제발표 ('40)
	I.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II.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법적 규제 김수연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패널토론 ('40)
•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 이해영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 한명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회팀장) •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전체토론 및 질의 ('20)	

축사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국회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오늘 '아동·여성인권포럼'의 창립총회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의 확대에 따라 온라인이나 채팅 앱을 통해 십대청소년들이 성폭력,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를 살펴보니, 실제 청소년 성매매의 90% 이상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알려진 채팅 앱 종류만도 7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작년 3월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자에게 14세 청소년이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채팅앱이 성매매알선의 주요한 형태로 대두되면서 성매매시장을 무한 확장시키고 있지만, 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미비할 따름입니다. 또한 성인인증절차가 없어 별다른 제약 없이 온라인 공간에 접근 가능함에 따라 피해자가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고 수익으로 영리를 취하고 있는 채팅앱들은 대화 내용을 자동 삭제하는 등 교묘히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는데, 채팅앱에 대한 규제 법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심각상황입니다. 반면, 성착취를 당한 피해 청소년들은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과 채팅앱 등을 매개로 발생하는 청소년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각각의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모아 보다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내주시어 발표를 해주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님, 재단법인동천 김수연 변호사님, 토론을 해주시는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님,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이해영 교수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명호 팀장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김성벽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온라인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십대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재·개정에 앞장설 것입니다. 나아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향성을 모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삼화입니다.

참으로 무더웠던 지난여름 폭염에 고생들 많으셨지요? 이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고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는 등 가을의 문턱에서 국회 연구단체인 아동·여성인권포럼의 창립을 기념하며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님, 김수연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님, 토론을 해주시는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님, 이해영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님, 한명호 방심위 통신심의기획팀장님,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천인공노할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5년 714건이던 청소년 성범죄는 2014년 2564건으로 급격히 증가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성범죄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받아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구속된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PC 및 스마트폰 채팅에서 범죄가 시작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성범죄로 유인하는 각종 온라인 광고 및 채팅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IT기술 발전은 빠른 접근성, 높은 정보력 등 눈부신 변화를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눈부심에 눈이 멀어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칠 부작용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인터넷상에서 시작되는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TV방송 등으로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불법·유해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성인인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신고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초석이 되어, 이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으며 밝고 건강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소중한 조언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시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입니다.

우선 국회 연구단체인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의 아동과 여성인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의정활동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의 첫 활동으로 개최한 토론회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아동·청소년인권문제에 관심 갖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정 이후에도 청소년 성매매와 성범죄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2009년 872명에서 2014년 2,826명,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2006년 1,745명에서 2012년 4,457명으로 2.55배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가 최초로 성립되는 장소의 78%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 조장 앱’ 182개 중 조건만남 유형의 앱이 172개(94.4%)나 됩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88%로 전세계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달과 인터넷, 스마트폰의 이용확산은 일상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고 집단지성의 플랫폼 역할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부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성인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어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시대에 맞게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과 무엇보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지원과 보호, 법률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신 현장 전문가이신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님, 김수연 변호사님과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님, 이해영 교수님, 한명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장님,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활발한 논의와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제문. 1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터)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례

사례1) 16세 소녀를 어플로 성매매한자고 유인한 뒤 성고문 한 피해 사례

Q 성매매하면서 감금 폭행 협박 당했습니다... 40
질문 3건 질문미답률 100% | 2013. 11. 26. | 답변 3 | 조회 26

이런데에 올리기 정말 쪽팔리고 민망하지만 ..
인터넷채팅으로 한남자를 만나서 모델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남자는 2만원을 더줄테니 집을가자했습니다 ..
그래서 집을 가서 성관계를 맺으려했지만 그남자가 피곤해서 잠안된다면서 원래는 6시 반까지 잇기로했습니
다... 아무리 그런걸로 만나도 약속이라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남자는 계속 30분만 더있다가 가라고 말을했지만 저도 약속이 있어서 인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입으려하자 뒤에서 목을조르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벨트로 손목을 묶이고 각종 폭행을 당했습니다 ..
제가 미안하다면서 그러니 그러면 자신이 사정을하게 해달라했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또말을까봐... 그더
러운놈과 했습니다 ... 구강성교를 먹지로 시키면서 때렸습니다 ... 욕은 기본이고 폭행도 기본이었습니다 ..
그러다 2시가 지나서.. 저는 감금을 당하고 ... 폭행도 수차례 당하고... 성관계도 ... 제 성기가 찢어질때까
지 ... 그러다 여차저차.. 계속.. 쉬지도 않고 ... 아침6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시가 되었고 그사람은 저를 손 발 입 전부 묶어놓고 장롱에 가렸습니다 ..
그럼10분뒤 그사람이 들어오고 먹지로 술을 마시게 하려고 협박을 했습니다 ...
그러고나서 술병으로 제 성기 모든곳에 다 넣고.. 10분동안 피스톤을 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
지금 얼굴을 보면 왼쪽광대뼈쪽이 부어있고 제대로 걸지도 못하고 밖에도 못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이사람이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차피 너가 신고해도 수사기간이 길어서 1년뒤에
판결이 날것이며 자신이 감옥에 가도 6개월밖에 안산다고 그랬습니다 .. 그러면서 여차피 너 가면 나 잠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했습니다 ... 친구는 흥신소를 해서 저를 찾아 넘길수도 있다고 했구요 ...
정말 무섭습니다이거 답변좀.. 제발 빨리 해주세요....

날짜	내용
2013. 2.	○○○은 2013년 2월 네이버 지식인에 성구매자가 자신에게 폭행, 폭언을 하고 감금, 협박, 성폭력, 성기상해, 술 먹이기를 하여 몰래 도망나왔다는 질문을 남기며 전과자로 추정된다고 함. 이에 센터에서는 지식인 답변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기관을 알려주었음.
3월	메신저를 통해 ○○○이 대화를 신청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음. 현재 X지역에서 남자친구와 살고 있으며 부모님과 연락하고 지내고 있음. 피해일은 2월로 친부에게 피해를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피해 이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도 많이 호전된 상태여서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고 함. 사건 이후 엑스레이 기록이 있지만 의사에게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한 뒤 진료를 받았다고 함. 가해자를 신고하고 싶다고 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 사실을 확인 한 후 X지역 성폭력전담팀에 신고를 함.
	XX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상담원이 동석하였음. 증인으로는 남자친구와 친구가 있으며 증거로는 피해를 당한 지 일주일만 지났을 때 찍은 팔이 묶였던 자국 사진, 목이 졸린 자국 사진 등이 있다고 함. 가해자의 집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탈출 이후 메신저에서 가해자를 차단했다고 함.
	치료를 받았던 정형외과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상해라는 근거가 없어 진단서 발급이 어려우며 일반 진단서도 부모님이 동행해야 가능하다고 함.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 형사와 함께 가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으며 가해자의 차량과 사건 당시 증거품 등을 확인하였음. 당시 가해자가 집에 없어 가해자의 얼굴은 사진으로 확인하였음. 윈스톱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진단서 발급여부를 물어보니 상해진단서의 경우 시일이 지나 발급이 어려우나 산부인과 진단서의 경우 성병이 확인될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음.
	윈스톱지원센터에서는 입질, 클라메디아, 질염 등이 확인되었으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함.
	가해자가 검거되어 증거에 대한 추가 진술을 위해 상담원 동석하에 추가 조사를 받음.
4월	○○○으로부터 담당 형사가 살인사건으로 바뀐 관계로 가해자가 도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판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음. 사건조사 담당형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원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가해자가 도주한 것에 대해 수사진행상황을 문의하자 담당형사는 수사와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고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였음.
	○○○에게 진정서 제출 동의를 받았으며 자신의 실명을 표기하지 말라고 요청하여 ○○○의 권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함.
	경찰청, 대검찰청, 국민신문고 총 3곳에 진정서 제출함. 가해자 도주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가해자 긴급 체포 촉구, 재발 방지 약속 등의 내용임.

날짜	내용
5월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결과 안내 - 기관재분류하여 대검찰청으로 이송하였음.
	대검찰청에서 처리결과 안내 - X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였음.
	XX경찰서에서 피진정인 ㄱOO 형사와 sOO 형사가 찾아와서 도주사건이 아님을 밝히고 전반적인 수사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줌. • 3월: 신고접수 / 3월: 현장조사 • 3월: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검사인 성폭력 전담검사가 체포영장을 반려함. 이유는 가해자의 행동이 SM플레이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피해자가 4-5번의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것을 보아, SM플레이를 전제로 조건만남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수사보장을 지시함. • 3월: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를 추가 조사하여 SM플레이가 아님을 확인받음. • 3월: 피해자 ○○○과 피해자 남자친구를 불러 가해자 집을 확인하고 가해자는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성매매에 대해서만 인정함. • 3월: 담당상담원 동석 하에 피해자 조사함. 증거물 확인과 SM플레이가 아님을 확인 받음. 가해자는 자신이 정신과 진료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하며 진단서,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오겠다고 함. 이후 오후 2시부터 연락이 안 되며 행방이 묘연해짐. • 3월: 통신수사 위해 1달을 유효기한으로 체포영장 신청. • 3월: 체포영장 발부되어 네이트온, 전화 등 추적하였으나 가해자는 접속하지 않았음. • 4월: 7월을 기한으로 체포영장, 가해자 수배를 신청함. • 5월: 가해자 수배함.
	X지방경찰청 민원에 대한 회신함. - 피의자는 임의 동행하여 1차 조사를 마친 후 귀가 조치를 하였으나, 이후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연락두절 되었음. 이에 피의자 검거를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이며 노력하겠음.
	X지검 사건과에서 민원 접수함. 6월에 진정한 조사를 하기로 함.
	1) X지검에 방문하여 조사관에게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3시간 동안 조사받음. 2) 조사 과정 (1) 가해자 도주에 대한 사건 경위 설명함. (2) 진정서 관련 내용 검토, 진정 취지 확인함. (3) 진정한 조대표의 진술조서 작성함. (4) 진술조서 확인 및 수정함.

날짜	내용
	<p>3)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관: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문서와 수사경찰 100에게 진술서를 받아서 검토하였고, 가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이 3-4일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경찰이 방치해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속하게 하였다고 보여진다. 가해자가 잠적한 이후에도 통신 감시, 가해자 집 방문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진정인은 수사경찰 100에게 징계를 내리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본 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 진정인 조대표: 수사경찰 100와 형사 100이 찾아와서 사건경위에 대해 설명해주었고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는 것을 인정한다. 본 기관이 진정한 이유는 도주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으나, 3차례나 조사과정에 동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진정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사건정황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징계는 원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였으면 한다. · 조사관: 수사지휘 검사의 지휘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 수사지휘권은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검사마다 지휘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휘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고 수사지휘 검사가 SM플레이가 아니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을 뿐이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진정인 조대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하지만 지휘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여 지휘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들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도주하도록 만들었고 피해자는 아무런 대책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수사 지휘한 검사가 사건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편견이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가출한 청소년이 아니고 가해자를 조건만남을 전제로 만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여도 과연 SM플레이로 만났다고 생각하고 확인하라고 지휘할 수 있었겠는가? 설령 SM play로 가해자를 만났다 해도 16세 아이에게 이런것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의문이다. 긴급체포 후 48시간안에 증거보충 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 진정인 조대표의 의견을 진술조서에 모두 적었으며 본 진정인의 법무부 가디언즈 위촉장과 X지방경찰청의 민원답변 내용을 첨부하였음. · 진정조서는 수사 기록에 편철하여 수사를 엄중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음. <p>· 결과: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종결함.</p>

날짜	내용
7월	7월로 체포영장기간이 종료되어 담당형사에게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함. 가해자는 Z에 있으며 Z경찰서에서 수배검거기간이라 탐문을 하였으나 가해자가 탐문을 하는 것을 알고 도망을 친 상황이라고 밝힘. 이후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통신수사, 수배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함.
10월	검찰에서 가해자를 체포했고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연락함.
12월	상담팀에서 재판참관함. (2차공판)
	X지방법원 제0형사부, 공판검사 총 2곳에 ‘엄벌 탄원의 건’ 탄원서 제출.
	상담팀에서 재판참관함. (3차공판) 가해자는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정보공개 7년, 40시간 치료명령을 선고받음.
2014. 4.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가해자측 변호사가 합의의사를 물어보는 연락이 왔었다는 것을 전해들음. 가해자측에서 항소를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합의내용없이 합의여부만 물어보는 것이기에 000에게 전해주고 생각 후 다시 연락하기로 함.
4월-8월	000에게 의사를 물어보자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여 센터에서는 센터 내 법률지원단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할 수 있음을 알려주자 소송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뜻을 밝힘. - 상담팀에서 항소심 3차공판 참관.(5월 선고기일/T고등법원) 8월 가해자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기각됨.
9월-11월	- 친부·친모의 사망으로 법적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어렵기에 00지방법원 재판을 통해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 내담자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음.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담자와 함께 본 센터 의료지원단 소속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방문하여 검사 및 상담을 받음. 현재도 내담자는 우울과 불안 치수가 높지만 진단서 발급은 3개월 가량 지속적인 상담을 받았을 경우 가능하므로 배제진단소견서를 발급받고 불면증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음. - 본 센터 법률지원단 소속 담당변호사를 통해 00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상담지원, 자활·취업·생활지원, 피해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015. 4.	- 후견인 조OO 대표의 재산상황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아 문서로 00지방법원에 제출함. - 2015년 4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소함.

1) 위 사례 지원 과정으로 본 수사·사법기관의 문제점 및 대책

위 사건은 사이버포레 상담원들의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말걸기가 없었다면 그저 포털 사이트에 떠도는 성매매 성폭력 괴담정도로 끝났을 사례였다. 상담원들의 적극적인 찾아가는 상담으로 만16세 피해자를 온라인 상에서 대화할 수 있었고 대면상담으로 이어지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었다.

(1) 성폭력전담팀에 초동조사를 받기 위해 갔지만,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성매매 사건이니 자신들 부서에서 조사하지 않겠다고 함. 적극적으로 수사관을 설득, 3시간동안 영상진술녹화 수사를 받았고 수사가 다 진행된 후 담당수사관은 성폭력 사건이 맞다고 인정함. 성폭력 사건으로 인정받아 미성년자 국선변호인 선임함.

⇒ 현재 아청법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만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고 있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성폭력 전담팀에서 영상녹화 진술을 받을 수 없다. 수사기관 역시 여성청소년과가 있지만 이곳에서 역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 정보 제공 등만을 하고 있어 사실상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강력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경우, 아이들의 피해양상이나 특성을 잘 모르는 수사관들에 의한 2차 피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국선변호인 역시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2) 상해 치료를 위해 각종 단체, 의료기관 방문. 증거제출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받고자 했지만 미성년자임으로 부모가 와야한다고 함. 부모와 연락이 안되어 진단서 발급받지 못함. 상담소의 장이 부모와 같은 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함.

(3) 성폭력 전담검사에 의해 영장청구 반려됨. SM(사도-마조히즘) play로 조건만남하였으면서 이후에 피해자라 마음을 바꿔 성폭력으로 신고했을지 모르지 SM play가 아니었음을 추가로 밝혀내라함. 구속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하였고, 가해자는 성매매는 인정하였으나 성폭력은 부인, 증거보강을 위해 가해자를 돌려보냈고 이후 가해자도주함.

⇒ 성폭력 전담검사는 성폭력은 보호받아야 하나 성매매는 범죄라는 관점에서 16세 소녀 피해자를 피해자로 보지 않음. 아청법상 대상청소년은 보호처분의 대상임. 검찰의 시각에 대해 문제제기 함. 검·경찰에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하며,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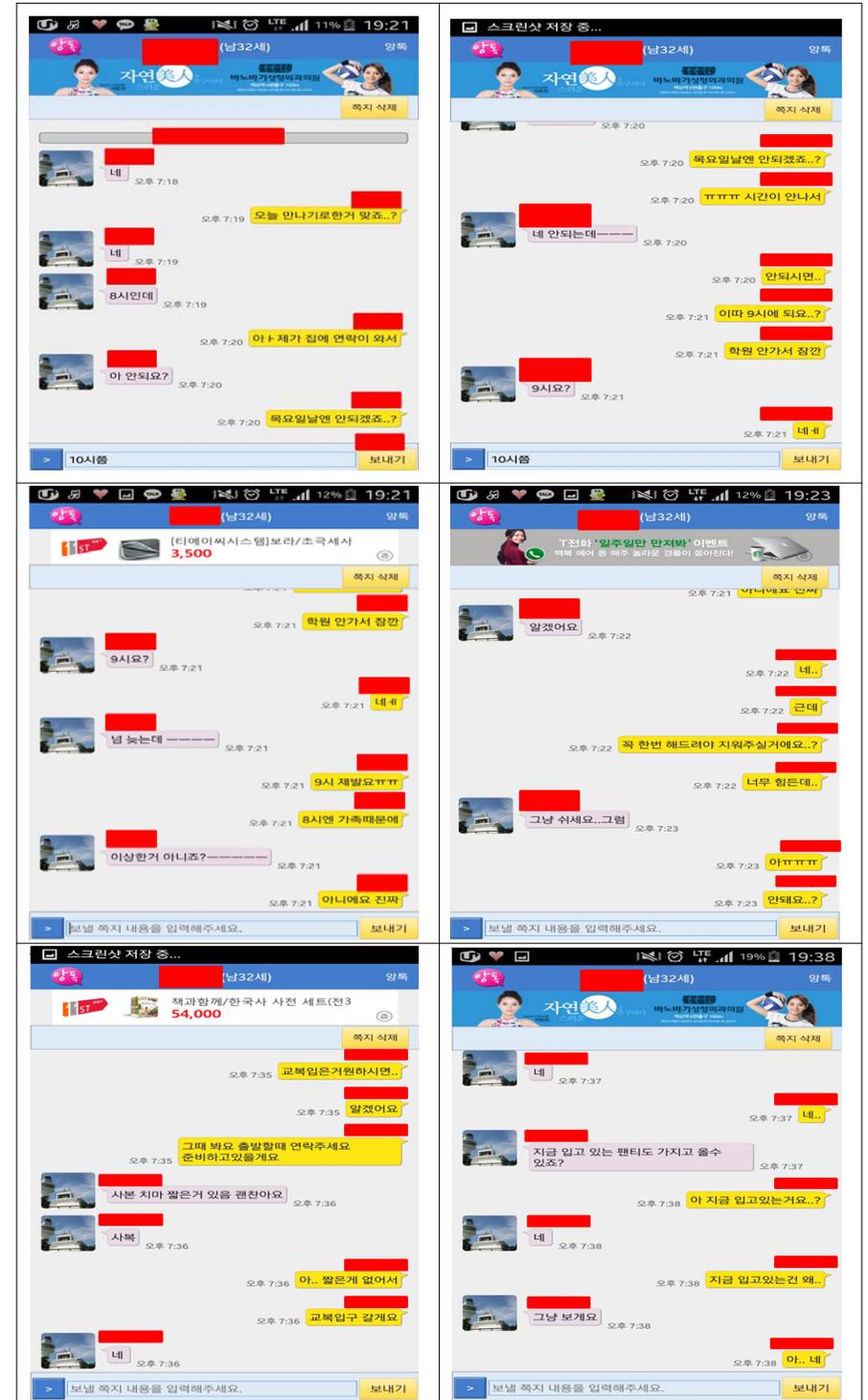
cf. 비슷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성인이었을 경우에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8년, 20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공개고지 5년을 선고하였다.

(4) 재판 참여. 가해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선처를 주장, 이러한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범죄이므로 반드시 신체 구금형이 선고되어야 함.

(5)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피해자 주변 친척들에게 후견인이 돼 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모두 거절함. 본 센터 대표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소를 제기함. 후견인 지정관련 소송이 많아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설명을 듣고, 곧 성인이 될 피해자를 위해 빠른 처리를 부탁하였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지원을 받게 함. 현재 본 단체의 대표가 후견인으로 받아들여짐. 확인 결과 범죄자의 재산이 거의 없었음. 이런 경우, 승소한다 하여도 피해보상금을 받기 어려움. 이에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 구상권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사례2) 호기심에 어플을 내려받고 1회 성매매 후 성매수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몰래 영상이 찍히고 피해자의 개인 SNS를 통해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당한 17세 사례

2015. O. O. 32세 성매수자는 채팅 어플 ‘앙투’을 통해 알게 된 17세 피해자와 만나 12만원을 주고 1회 성매수자의 차량에서 성매매를 하였으며, 이때 성매수자는 17세 피해자 몰래 차량의 블랙박스 카메라를 통해 현장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여 어플을 삭제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지만 성매수자는 어떻게 찾았는지 피해자의 개인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며 다시 만나자고 하였다. 너무 놀란 피해자는 개인 SNS 개정을 삭제하고 거절하였으나 새로 만든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을 미끼로 성관계를 하면 지워주겠다고 협박하였다. 2015. O. O. 성매수자는 한번만 만나주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며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당일 센터에서는 경찰과 함께 현장검거를 통해 성매수자를 긴급 체포하였다. 체포한 후 성매수자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수많은 동영상을 발견하였는데, 거기에는 또다른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17회, 성인들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총 21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다. 이 사건으로 성매수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아동·청소년특별법 위반 1심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



사례3)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를 아동에 대한 침해가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2016. 4.)

- 사건배경

2014년 6월경, 만 13세를 2개월 지난 한 아이가 모친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놀다가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다. 엄마에게 야단맞는 것이 두려워 아이는 가출을 결심하고 핸드폰의 친구찾기 앱을 통해 '가출함, 재워줄 사람'이라는 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 성인 남성을 만났다.(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가해자 양씨) 또래에 비해 지능이 약간 떨어져 학교에서도 자주 왕따경험이 있던 아이는 갈곳이 없어 그 남성을 따라 모텔에 가서 성폭행을 당했다. 첫 성경험이었고 너무 무서웠고 혼란스러웠던 아이는 더욱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 앱을 통해 친구를 찾았다. 그후 6명에 달하는 성인 남성들에게 간음 및 추행을 당했다. 가출신고가 되어 있어 거의 1주일 이 지난 후 아이를 찾았지만 아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이의 엄마는 거지꼴이 되어 있고 뭔가 이상한 아이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서울의 한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성폭력으로 신고한 후 국선변호사 입회하에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술하였다. 지능이 7세 수준인 만 13세 아이가 가출하였다 하지만 그 아이를 만났던 십여명에 달하는 어떤 성인도 아이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 아이를 성폭행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고 아이를 안심시킨 후 횡설수설하는 아이를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등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아이는 그 일이 있고 난후 극도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심각한 우울 증상을 보였고 급기야 자살시도까지 하였다. 결국 어머니는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야 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정신병원에서도 남성 보호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 기가막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보호사를 성폭력으로 신고하였다.

사건은 2종류로 분류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가출한 후 당한 성폭력 사건과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2차 성폭력 사건으로 따로 분류하여 진행되었으나 첫 번째 가출후 성폭행당한 사건은 아이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함 재워줄 사람'이라는 방을 개설했고, 떡볶이나 치킨 등을 얻어먹었다 하여 자발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성폭력사건이 아니라 성매매사건으로 수사방향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 성폭력사건을 지원했던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는 성폭력피해가 아닌 성매매 사건이라 하여 아이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며 지원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아이의 심리상담을 하던 선생님의 의해 십대여성인권센터에 연계되었다.

12월이 되어 사건은 하나씩 결정이 났다. 총 6명의 가해 남성이 특정되어 성폭력 범죄로 조사를 받았지만 각각의 사건이 모두 성매매사건으로 인지되었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12월까지 3명의 가해자 중 1명만 아동청소년성매매로 기소되었고 나머지 2명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리 되었다. 만 13세를 겨우 2개월 지냈을 뿐인 아이를 강제가 아니라 하여 성폭력도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가를 주지 않았다 하여 성매매로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당시 국선변호사를 통해 무혐의 불기소 사건에 대해 항고하려했지만, 국선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성폭력사건이 아니라 성매매사건으로 처리된 사건이라 더 이상 국선변호사로서 사건을 변호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에서 이 사건을 받아 무혐의 결정된 가해자 2인에 대해 항고를 하였고,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십대여성인권센터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았다.

- 경과

2014.7.8	해와나무 상담소 서은미 소장(십대여성인권센터 심리지원단) 통해 사건 의뢰됨.
2014.7.14	7.14 당시 피해자가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중이어서 외출시, 방문 상담함. 지적 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6. 6 핸드폰 액정을 깨트린 실수로 모친에게 혼이 날까봐 가출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워줄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린 뒤, 이후 만나게 된 남성들 6명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그와 관련하여 형사 사건들이 진행중임을 파악함. 내담자는 사건 후유증으로 사건 직후인 6. 15부터 상담 의뢰된 이후인 10월까지도 우울증, 불면증, 자살시도 등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퇴원을 반복했고, 가장이었던 모친 역시 사건으로 인해 생업을 중단하며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됨.
2014. 12	6명의 가해자 중 12. 24 표**와 12. 31 이**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됨을 알게 되어 본 센터의 법률지원단을 통해 논의하여 항고장 제출 뒤, 재기 수사 결정됨. 그러나 표**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임. 6명의 가해자 형사 공판 종료 후 본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와 모친의 정신적 피해 보상과 그로 인해 발생한 생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 등의 보상을 위해 각 건마다 본 센터의 법률지원단(서순성, 기희광, 김병희, 배진수, 배수진, 최석봉 변호사)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2015. 2	가해자 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선고됨. 이후 2015. 7 본 센터 법률지원단 최석봉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6. 4 일부 승소함(서울동부지법).
2015. 4	가해자 최**: 징역 10월,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선고됨. 이후 2015. 6 본 센터 법률지원단 김병희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5. 11 승소함(서울서부지법).
2015. 5	본 건의 피고인 양**: 벌금 4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 선고됨. 선고 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으로 생긴 공백으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되어 판결 결과를 알지 못해 항소를 하지 못함. 이후 2015. 7 본 센터 법률지원단 배진수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6. 4. 28 원고 패소함(서울서부지법).
2015. 6	가해자 하**: 벌금 1,0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선고됨. 검사 측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선고됨. 이후 본 센터 법률지원단 배수진 변호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예정임.
2015. 9	가해자 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선고됨. 피고인 측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선고됨. 이후 2015. 11 본 센터 법률지원단장 서순성 변호사, 기희광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진행중.
2016. 5	같은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김**와 본 건 양**의 판결이 재판부마다 상이하여 패소한 양**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한 문제 제기 및 항소장을 2016. 5. 16 제출하기로 함.

- 형사소송 판결 결과와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표] 형사소송 판결 결과와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가해자	형사재판부	판결내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담당 변호사
양OO	서울동부지법	벌금 4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	서울서부지법 1심 패소, 항소예정	배진수 변호사
하OO	서울북부지법	벌금 10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진행사항 없음	배수진 변호사
최OO	인천지법	징역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서울서부지법 승소	김병희 변호사
김OO	전주지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서울서부지법 1심 승소, 배상금 일부인정, 피고/원고 모두 항소함	최석봉 변호사
표OO	대구지검 재기수사 결정	기소중지(소재불명)		
이OO	서울동부지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서울동부지법 1심 진행 중	기희광 변호사

- 문제점

① 편의적 수사, 성의없는 수사, 전문성없는 수사

왜 성폭력이 아닌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가 됐는지?

.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14세(만13세 2개월)였음과 경계성 지적장애아동청소년의 가출 1주일동안 발생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하지 않고 가해자 개인의 사건으로 수사하여 사건을 전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개별사건으로 수사

. 연령 및 장애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없이 강제성이 없었다는 단순한 적용

. 스마트폰 어플에 방을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발적 성매매 제안한 것으로 인지(대상청소년 개념 적용)

. 떡볶이, 치킨 등을 얻어먹고, 모텔방비를 지원받았다는 점 등에서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

. 나아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뺏어 모텔비를 가해자가 보태서 내고, 성폭력 후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대가성이 없다고 기소도 하지 않음.

② 성매매 사건이라 하여 초기 수사지원을 했던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모든 지원을 끊음

③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국선변호인 제도

④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에 대한 전문 지원 시스템 부재(상담소, 검경찰에 전문 부서 부재 등)

. 현재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 상담소가 없고(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소가 아니며), 성매매 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 제도도 사용할 수 없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음. 그러나 십대여성인권센터에는 법률지원단이 꾸려져 있어 이 사건 하나에 십여명의 변호인이 무료 변호해 주어 이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음

⑤ 너무 약한 처벌 수위(벌금,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이 성인을 성매매로 유인했다고 생각하는 인식. 성인 성매매수자의 존재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아동청소년을 관리하겠다는 자세.

. 범죄를 위축시키지 못하는 처벌 수위

⑥ 형사상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한 법원의 판결.

.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 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으로 인지(대상청소년) 처벌받아야 하나 아동청소년이므로 보호처분에 처한다. 성매매 범죄의 대등한 범죄자로 취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특징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매개가 된다는 사실과 성폭력범죄와 성매매범죄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II.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현황¹⁾

1. 개요

인터넷/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하고 사용자 연령대가 다양해진 현재, 접촉성과 편리함이 높은 온라인 환경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현장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모니터링/신고 활동을 하고 있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팀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과 특징, 변화 추이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현재 사이버포래상담팀에서는 온라인 현장을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로 나눠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1. 어플리케이션 / 2. 사이트로 나눠서 현장의 특징과 변화 등이 청소년 성매매에 주고 있는 영향에 대해 정리하고, 최근에 새로운 현장으로 발견되고 이미 꽤 활발해진 3. 섹시방송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다.

2. 어플리케이션

갖가지 종류의 어플리케이션 중에 수많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아동청소년 성구매/알선의 현장이 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장에 기여하고 있는 특징과 현장변화이다.

1) 채팅 어플리케이션 특징

① 익명성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회원가입의 절차 없이 닉네임/성별/나이/지역을 임의로 설정한 후 바로 입장한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익명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핸드폰번호와도 전혀 상관없이 닉네임만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익명성은 채팅과 채팅을 통한 만남의 위험성을 높인다. 또한 성별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는 특징은 성매매 알선자가 성판매자로 둔갑하여 채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매우 많다.

1)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팀에서 작성함

② 성인인증절차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성매매 구매/알선의 현장으로 활동되기 시작한 시기에는 성인인증절차가 전혀 없어서 미성년자 여부와 상관없이 채팅을 할 수 있었으나, 2015년 3월 26일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이 일어난 후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성인인증절차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중에 성매매 정황이 활발히 보이는 어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은 성인인증절차가 없는 실정이다(앙톡, 심톡, 영톡, 즐톡, 특앤 등). 대신 나이 설정을 20세 이상부터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앙톡, 특앤, 앙스, 영톡, 즐톡 등)이 있지만 닉네임에 '18', '열7곱', '고등학생' 등의 닉네임으로 아동청소년을 구분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어플리케이션 중 심톡은 성인인증절차 없이 나이 설정을 17세부터 할 수 있게 되어있다.

③ 대화내용 저장관련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성구매/알선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특징은 대화내용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화내용을 따로 저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화도중 일방적으로 채팅방을 나가는 순간 모든 대화내용이 삭제된다는 특징이 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를 나누는 관계에서 거의 대부분은 서로의 번호를 공유하지 않고 이뤄지는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내용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대화창을 둘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성구매/알선자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매우 유용한 특징이 된다.

2) 일부 어플리케이션 운영방식의 변화

① 캡처 불가

최근 성매매 알선의 장소가 되고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중 일부에서 캡처가 되지 않도록 운영자가 캡처를 막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특앤, 앙톡, 앙스 등). 개인으로서는 자료를 남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은 성구매/알선자를 신고하고 싶어도 캡처화면을 증거로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신고하는 데 큰 어려움이 된다.

② 포인트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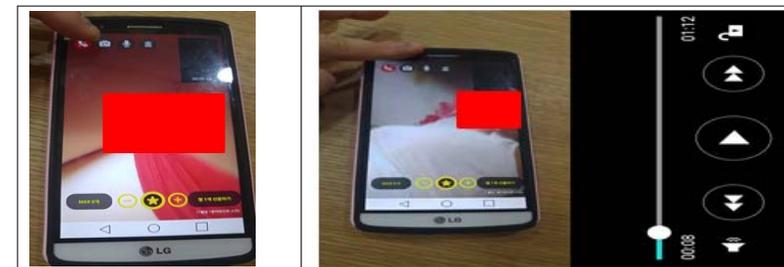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은 상대방에게 쪽지를 보내 채팅을 시작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충전해서 사용해야 하는 방식이다. 포인트 활용은 운영자가 이익을 얻는 주요 통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포인트 활용방식이 최근 들어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일부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82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처음 쪽지를 보내 1:1 채팅방을 개설할 때만 포인트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답장이 오면서 대화가 이어질 때 쪽지마다 지속적으로 일정 포인트가 소요되도록 되어있다. 이 때 운영자뿐 아니라 채팅을 이어가는 상대방에게도 일부 포인트가 돌아가고 그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특징은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더 자극적인 대화를 시도하게 하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성구매남이 포인트를 소요해 여자 청소년에게 대화를 걸고 대화를 이어갔다면 성구매남은 쪽지를 보낼 때마다 포인트를 소요하게 되고, 그만큼 여자 청소년에게 포인트가 적립되기 때문에 여자 청소년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자극적인 대화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남성 사용자들이 포인트를 충전해 사용하고 여성 사용자들은 포인트를 충전하지 않아도 남성에게서 쪽지가 오고 대화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 활용 특징은 성매매 환경을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영상

성매매 정황이 활발히 보이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중 '심톡'은 최근 영상채팅도 가능하게 되었다. 남성 사용자가 포인트를 소요해 영상채팅을 하면, 여성 사용자에게 포인트가 충전되고 현금으로 환급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채팅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 심톡 영상채팅 자료첨부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현황

사이버포래상담팀에서는 성매매 정황이 보이는 채팅 어플리케이션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신고 활동을 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내에 성매매 정황이 나타나는 화면을 캡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어플폐쇄 요청을 하지만 그로 인해 어플이 폐쇄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미유통’ 이나 ‘해당 없음’ 등의 처리결과를 받고 있다. 2016년 상반기 신고 현황을 봤을 때 어플리케이션 캡처 신고 총 94건의 처리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	총계	미유통	중복신고	이용자 이용제한	내용확인 불가	해당 없음	처리중
건	94	19	17	10	2	29	17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 이다. 이것은 신고내용이 성매매 정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고사업을 시작한 초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의했을 때, 성매매 정황으로 파악되기 위해서는 한 제목 안에 정확히 성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게시되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예를 들어, ‘조건만남, 1-10만원, 콘필, 서울, 165cm/59kg, 19세’ 이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성매매 정황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실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알선이 이루어질 땐 최대한 간단하게 줄임말로 표시하고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대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매매 현장을 신고하여 성매매 알선을 예방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한 내용이라고 파악되어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게 하는 ‘이용자 이용제한’의 결과도 소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이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되기 때문에 성구매/알선을 제재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없다.

‘미유통’의 결과가 ‘해당 없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 미유통이란, 신고된 어플리케이션의 URL이 이미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신고가 접수되고 처리가 되는 사이에 이미 업데이트 등으로 URL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URL로는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이다.

4) 지속적으로 탈바꿈하는 어플리케이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데이트의 명목으로 매우 자주 탈바꿈하고 있다.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자주 바뀌고, 현재 사용 중인 어플리케이션이 google play에 검색되지 않는 상황이 매우 많다.

5) 신조어 변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성매매 관련 용어는 대부분 줄임말, 신조어이고 이러한 용어는 계속해서 변화한다.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상의 환경 특징이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금지어로 제재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신조어를 계속 생성해내는 이유도 있다.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던 ‘조건만남’이라는 용어도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를 피하기 위해 ‘스ㄱ’, ‘스건’, ‘쪄건’ 등으로 많이 활용되었는데, 요새는 건전/비건전/반건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건전’은 애인대행/식사 등의 만남을 의미하고, ‘비건전’은 성관계를, ‘반건전’은 유사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전만남이라고 해서 실제로 ‘애인대행/식사’ 등으로 끝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최근 사진/영상 등을 공유 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식의 성매매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신조어가 ‘온플’이다. ‘온라인플레이’의 줄임말로써 온라인 상으로 사진/영상 등을 공유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내용의 성매매 정황이다.

고등학생을 뜻하는 ‘고등어’라는 신조어도 사용되기 시작해 미성년자를 구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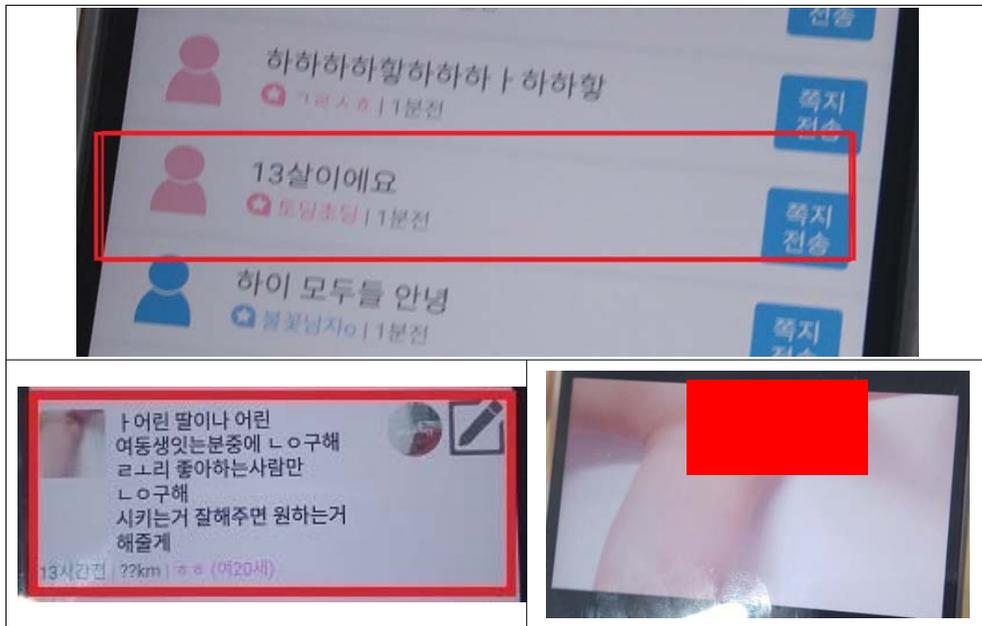
5) 이용자들의 변화

① 연령대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변화 중에 주요한 것은 연령에 관한 점이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낮은 연령대의 활동 모습이 점점 보이는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얼마나 무분별하게 음란한 내용이 아동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초등학생이 채팅 어플리케이션

을 이용하는 현상도 발견하게 되는데, 첨부자료에는 나이만 언급한 캡처화면이지만, 이 외 초등학생이 ‘노예’ 등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채팅을 하는 모습도 홍보/상담 활동 중에 발견되고 있다.

또한 첨부 캡처화면에서도 보듯이, 어린 아기를 성적 대상으로 구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무분별한 내용의 채팅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채팅 대상의 연령대도 걸잡을 수 없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연령대 관련한 이용자 변화 자료첨부

② 혼혈 여성

최근 ‘혼혈’ 여성을 찾는 남성 성구매자를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혼혈’이라는 특징을 강조하는 여성 이용자들이 있다. 외국인들은 언어의 한계로 인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활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혼혈’ 여성을 원하는 남성들이 보이는 것은 좀 더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이트

사이버포래상담팀에서는 현재 ‘세이클럽’, ‘하늘사랑’, ‘토크온’ 등의 사이트에서 홍보/모니터링 신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이트를 이용하는 연령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이를 불문하고 이용자 수가 많았던 이전과는 달리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생긴 후로는 30대 이상의 성인 이용자들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 상담원들이 모니터링 신고 활동을 할 때와는 다르게 여름방학 특별 야간상담 때 확인해 본 결과,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수위가 높은 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시, ...아 바바 랑,,,감쪽한 어링(10대,20대)딸 이랑...편하게/ ###아찌인데,,,직접내거기?보면서~내숭없이~(노캠oo)###/ 설~빨고싶다!부드럽게!오랫동안!벌어진..시커먼,,정글을..전복꽃잎을..! 개처럼 앞드린체,,,,, 두 남자에게 번갈아 가며,,,,)

개인 조건만남이나 청소년 성매매 유인의 정황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옮겨간 반면, 여전히 많은 업소 및 성인들의 성매매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섹시방송

인터넷 검색창에 ‘섹시방송’이라고 검색하면 다수의 사이트들이 검색된다. 성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가입부터 방송 시청까지 모두 무료이다. 아프리카TV에서 영구정지를 당한 섹시BJ들이 섹시방송으로 옮겨가고 있다. 섹시방송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스마트폰에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섹시BJ들이 노출 의상을 입는 이유가 의상은 곧 시청자수와 별풍선(섹시방송마다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지만 현금으로 환급 가능한, 시청자들이 BJ에게 돈을 쏘는 것을 별풍선이라고 칭하겠다.) 수익에 연계가 된다고 한다. 시청자들은 갈수록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 방송규제가 없는 섹시방송에서 높은 수위의 방송들이 진행된다. 일부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선결제를 해야만 시청할 수 있는 방송도 있는데, 그런 방송에서는 더 수위가 높은 방송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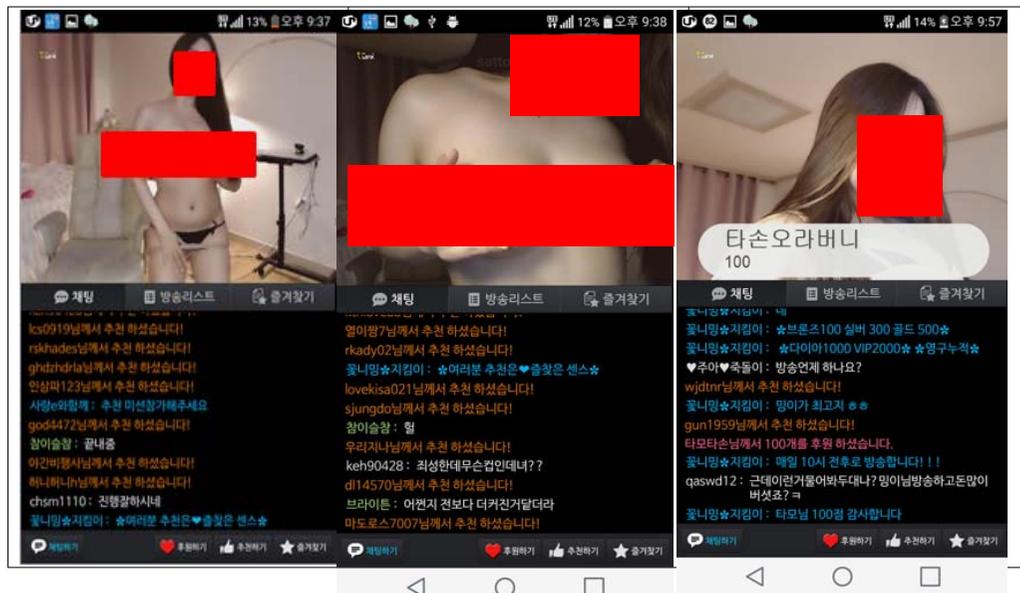
섹시방송에 다수의 이용자가 몰리는 이유는 어플리케이션 채팅에서는 쪽지

를 보내기 위해 포인트를 구입해야 하는 반면 섹시방송은 무료로 시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방송이 24시간 진행되고, 직장인 남성들의 퇴근시간에 맞춰 9시 이후부터 섹시BJ들의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점이다.

또한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고 별풍선을 쏘는 것에 대해 BJ가 해당 아이디를 직접 언급하면서 반응하는 방식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이용해 성구매 남성들이 욕구를 채우고 있다.

위에 언급했듯이 돈(포인트 충전)이 없이도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익명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폐쇄적인 성구매 남성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이 있다. 시청자들의 반응과 BJ의 활동을 살펴봤을 때 오프라인 활동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방송에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성매매가 활발해진다면 위험한 상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신고 기능이 있는 사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신고를 했어도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사이버포대상담팀에서 섹시방송 모니터링을 최근에 시작했고, 내부 신고 버튼이 있어 신고를 하고 신고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문의 메일을 보냈지만 아직 답을 받을 수가 없었다.



* 섹시방송 자료첨부

(인터넷 개인방송 BJ여자 알바 모집 공고글)

인터넷 개인방송 BJ여자 알바 모집 합니다.
일 자리를 아직 안구하셨거나..
편하게~투잡 생각있으신분들이라면 아래의 글을 필독해주세요!
인터넷개인방송 BJ 여성분들을 모집합니다.(초보도 환영^^ 경력자 대우해드립니다.)
아프리카TV와 유사한 인터넷 개인방송국 입니다.
초보자도 아주쉽게 방송할수있도록 매니져지원 해드립니다.

- 최고의 개인방송 -
- * 강력한 녹화방지 기술과 불량이용자 차단 정책으로 방송자의 권리를 보호 합니다.
- * 24시간 BJ 전담 상담 센터 운영으로 각종 기술지원과 고충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 급여 ◀◀
- ▶ 시급제도입! 협의후 (기본 1시간당 1만원 ~ 15만원 지급!)+@
- ▶ 유료아이템@(별풍선 같은 개념) 선물 60%~80%지급!!

하루평균 2시간근무 기준! BJ분들 평균수익입니다.
*섹시컨셉 월평균수익 700만원~ 3000만원정도!
*건전컨셉 월평균수익 300만원~ 500만원정도!

▶ 근무시간 자유~! 개인집에서 재택근무가능~! 숙식제공~!
하루2시간만 방송하셔도됩니다^^ 편하게 돈버세요^^

▶ 나이 19세 ~ 35세까지
*19세는 부모동의서필요함.

- ▶ 휴무일: 쉬는날 자유선택!
- ▶ 기숙사 지원~!
- ▶ 얼굴,몸매 전혀 안따집니다^^* 여성분이면 누구나 가능!

*모바일 방송가능,PC사용하시는분은 고화질캠+마이크지원!
누구나 스타BJ로 자신의 끼를 펼칠 수 있는 인터넷방송!(초보 환영^^! 경력자 우대^^!)
누구나 부담 갖지 마시고,인터넷개인방송으로 꿈을 이뤄보세요^^*

- ★ 인터넷 개인방송일을 전혀 모르시고 지원하셔도 됩니다!
- ★ 초보자도 1일 정도만 해보시면 금방 적응 하십니다!(친절한 매니져 지원해드립니다^^)
- ★ 혼자 하시는 일이라서 눈치 볼 필요도, 부담 갖을 필요도 없습니다!
- ★ 얼굴 노출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비노출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출처] 인터넷 개인방송 BJ여자 알바 모집 합니다. (피팅모델 알바구인구직: 모델박스(쇼핑몰,사진사,웹디자이너,MD)) |작성자 최팀장

III.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예방과 대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가 모호하여 정확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하는 법률, 정책, 피해지원, 시스템 마련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대상청소년 개념 삭제, 보호처분 삭제, 피해자로 지원체계에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법률 발의 됨. (2016.08.08. 남윤인순 의원실)

2.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양형 상향 조정 필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적용 확대. 현재 만 13세 이하 의제강간으로만 적용되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3. 인터넷 사이트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섹시방송(TV)으로 이동/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실태.

-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고, 학교밖과 학교안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음
- 성매매 알선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어플, 방송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령 제정
-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기술적 대응을 위한 기업의 참여(좋은 기술)
-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이버 수사 전문가 구축
- 선진국의 경우처럼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는 가상 소녀 아바타로 성매수자 발견, 처벌 할 수 있는 수사기법 도입

4.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 시스템은 사이버 상담이 가능한 [발견, 주거, 교육, 의료, 법률, 상담, 자활]이라는 일련의 과정(continuum of care)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²⁾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2) 김고연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모델(가)",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간담회」 자료집, 2016.

5.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 증액

-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해마다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의 예산은 해마다 삭감되는 기현상.
(예. 위기청소년교육센터 2016년 예산 3,000만원 삭감)
- 범죄수익금몰수를 피해자 지원에 사용
- 인터넷, 어플, 방송 등 운영자, 관리자, 기업의 책임 일정액 부담

6.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 유인하는 행위도 처벌받으며, 이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불가능하다. 기수가 아닌 미수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효과적일 수 있다. 경찰과 어플 등 운영자와의 공조 필요

7. 정부, 경검찰 내 전담부서 마련

- 현 정부의 아동·청소년성매매 피해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에서 담당하고, 세부적으로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 등에 대한 관리는 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항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성매매피해청소년 치료 재활교육 지원은 폭력예방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가출, 청소년 비행·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등 광범위한 위기 청소년 지원정책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청소년자립지원과와 청소년보호환경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성매매문제는 대상과 주제에 따라, 성인 성매매피해자지원을 중심으로 한 권익증진국, 성매매피해를 제외한 아동청소년 문제는 청소년가족정책실로 나뉘어져 있어, 사실상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지원 문제는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부재할 뿐 아니라 분산되어 있어 장기적 전망과 계획, 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

- 경찰도 마찬가지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고, 생활질서과에서는 업소 단속 중심의 수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매매) 피해자들은 강력계나 형사과, 지능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는 점점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용 환경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획기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9.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 뿐이다.”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지속적 홍보,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

- 아동청소년이 성인을 성매매로 유인했다고 생각하는 인식. 성인 성매수자의 존재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아동청소년을 관리하겠다는 자세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정교화.(쉬운 처리)
- 그러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문제는 성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의 인식전환 하기 위한 홍보방안 마련

발제문. 2

온라인 조건 만남을 유인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법적 규제

김수연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I. 들어가며

최근 온라인이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채팅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성폭력 범죄의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채팅앱은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실질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운영자는 이러한 피해를 알고서도 청소년과 성구매자를 연결하는 채팅앱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사실상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채팅앱이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온라인 성매매로 인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채팅앱 운영자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체계가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운영을 통해 이익을 취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 규정의 해석상 해당 채팅앱 자체를 규제하고 운영자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채팅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문제가 되는 채팅앱의 규제와 관련된 현행법규정 현황 및 적용가능성과 이전에 발의되었던 개정 법률안 등을 형사법적 규제와 행정적 제재로 구분하여 검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형사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1. 형사법적 규제 현황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또는 중개에 이용된 채팅앱 규제와 관련하여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는 현행법 규정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알선영업행위’와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가 있다(그 외에 행정제재와 결합된 형사처분이 존재하며 이것은 ‘III. 행정법적 제재 현황 및 개선방안’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이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해당조항은 최근 청소년 성매매 양산의 주요 통로로 유용되며 조건만남 확산에 일조하고 있는 랜덤 채팅앱의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해석되어 문제가 된다.

청소년성보호법 15조에 따라 형사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채팅앱 운영자가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직접적인 업으로’ 하거나 ‘운영자가 직접’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채팅앱은 표면적으로는 친구 만들기를 표방하고, 앱 운영자나 관리자가 아닌 이용자가 직접 성매매 정보를 업로드하고 전달하며 공유하기 때문에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채팅앱 운영자에게 아동·청소년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에 대한 방조범 법리(성매수 또는 성매매 알선을 한 침해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 또한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채팅앱 운영자가 침해행위 또는 침해행위자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주장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¹⁾ 및 제15조 ‘알선 영업행위’의 방조범으로 주장해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형태의 방조죄는 현재까지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경우에만 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다²⁾.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대한 판결 법리에 따르면, ‘채팅앱 운영자가 해당 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은 것’을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청소년 성매매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청소년 성매매를 방조한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는 그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채팅앱 운영자에게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방조죄를 적용한 형사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가사 채팅앱 운영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방조죄는 그 죄를 간접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성이 낮아진다. 불합리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방조범의 범리상, 운영자가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채팅앱 운영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1) 청소년보호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2007.12.14.선고2005도872판결[저작권법위반] 위 판결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하고, 서비스 운영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청소년보호법 제17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전송 혹은 이용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p>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u>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p>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p>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u>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u> <p>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p>

㉓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위 조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한 경우 이를 삭제하고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법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이용된 채팅앱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랜덤채팅 내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유도하는 글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³⁾’으로 정의하고 있어, 채팅앱의 대화창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글은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17조의 경우 해당 조항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확대하거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로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도 존재한다. 현재 통용되는 기술로는 서비스제공자가 순수하게 기술적 조치만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전달·공유되는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 또는 필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는 곧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무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공자 스스로 육안으로도 온라인상 정보를 검토하고 식별해야 함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해당 조치로 인해 오히려 타인의 사생활 등 비밀을 침해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이행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성매매알선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삭제되는 채팅앱의 특성상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만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확대하게 된다면 비례의 원칙(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목적과 수단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2. 일본의 관련 법률 및 국내 개정 법률안

가. 일본의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본의 경우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2003년 6월 13일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 법률은 “1)인터넷 이성소개 사이트 사업자는 경시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2)18세 미만 아동의 인터넷 이성소개 사이트 가입을 금지하고, 3)해당 사이트에 청소년 성매매를 암시 및 유발하는 글의 게시를 엄격히 금지하여, 4)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서 청소년성매매 유발 정보의 유통과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하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아동이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관련사항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점, 행정부처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과는 별도로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를 다룬 점, 온라인 사이트 외 랜덤 채팅앱 등의 플랫폼도 규제 가능하도록 한 점 등에서 한국의 현행 규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 국내 개정 법률안

국내에서는 2012년 이노근 의원 외 13인이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이용되는 모바일 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위 개정 법률안은 “경찰청의 청소년 성매매 최초 성립장소 유형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청소년 성매매는 528건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인터넷을 경로로 이루어진 성매매가 414건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최근 랜덤채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청소년성매매의 주요 경로가 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을 제안이유로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해외법률소개 제256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12.

(일본)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⁴⁾
<p>제1조(목적) 이 법률은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교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동시에 아동에 의한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이용에 기인하는 아동매춘 기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 등의 책무)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 및 그 실시하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배려하는 동시에 아동에 의한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이용방지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동에 의한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이용 방지에 관한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게 하기 위한 교육 및 계발에 노력하는 동시에 아동에 의한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이용 방지에 이바지하는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사업자, 국민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에 관련된 활동으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p>
<p>제7조(이용 금지의 명시 등) ①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는 그 실시하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에 대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때에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이 해당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p>

1) 아동·청소년이 관계되는 불특정 다수의 이성과의 만남인 경우에 대가의 제공 조건이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청소년 성매매 암시·유발 정보에 포함시킬 것(안 제10조의2 신설)

2) 청소년성매매 암시·유발 정보를 발견, 삭제, 전송중지, 중단 등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안 제10조의3 신설)

3) 아동·청소년은 불특정 사용자 간 대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안 제10조의4 신설)

개정 법률안은 “한국보다 앞서 청소년성매매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청소년성매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카페·블로그·스마트폰 등 청소년성매매의 경로가 다양하여 등록제 등 이러한 일본의 규제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환경 및 법체계를 고려하여 청소년성매매를 암시·유발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청소년성매매 암시·유발정보에 대한 삭제 및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에게는 ‘랜덤 채팅’과 같은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소년성매매 유발환경으로부터 국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제10조의 2(청소년 성매매 암시·유발 정보의 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청소년성매매암시·유발 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응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정보
 2.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의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의하는 정보
 3.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가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이성간 만남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정보
 4. 아동·청소년이 대가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성간 만남의 상대방이 될 것을 제의하는 정보
 5.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성간 만남을 유인 또는 권유하는 정보
 6. 아동·청소년이 불특정 다수의 이성의 사람을 대상으로 만남을 제의하는 정보
-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에는 사투리·비속어·약어·은어, 문자·그림·사진·동영상 등 해당 정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한다.

제10조의 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방지를 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성매매암시·유발정보를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청소년성매매암시·유발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암시·유발정보를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청소년성매매암시·유발정보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가 청소년성매매암시·유발정보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청소년성매매암시·유발정보로 인식되는 정보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제10조의 4(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 이용의 제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요자간 대화서비스(문자, 음성, 화상 등의 수단을 불문하고 이용자 간의 의사전달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대화서비스를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명·연

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위 개정 법률안은 심사과정에서 “성매매 암시 유발 유통금지 정보 범위의 적절성이나 명확성, 예측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안 제10조의 2),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고, 사인 간 통신에 대한 삭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안 제10조의 3),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 이용 제한의 내용이 랜덤 채팅 서비스 이외에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채팅 서비스 자체를 아동·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안 제10조의 4)” 등의 지적을 받아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3.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악용된 채팅앱의 운영을 형사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규제 관련조항들이 랜덤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유인 및 권유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고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지하듯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주로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피해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랜덤 채팅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한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현행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채팅앱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청소년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글은 위 법조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유인·권유의 글’을 발견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글을 즉시 삭제하는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역시 처벌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3년에 발의되었던 이노근 의원의 개정 법률안을 토대로 청소년성보호법상에 ‘청소년 성매매 암시·유발 정보 개념 확대’, ‘청소년성매매 암시·유발 정보 등에 대한 조치 관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아동·청소년의 불특정 사용자 간 대화서비스 이용에 있어 실명, 연령 확인 등 일정한 조치 의무’ 등과 같은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법적 개념과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과도한 입법이 되지 않는 동시에 규제 및 형사처분 대상에서 현행과 같이 문제가 되는 채팅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Ⅲ. 행정적 제재 현황 및 개선방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이용되는 채팅앱을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채팅앱을 「청소년보호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그에 따른 행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법 제8조 ‘매체물 등급구분’에 따라 해당 앱의 연령등급을 구분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게 하

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랜덤 채팅앱 운영자에게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벌을 가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각 방안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살펴보고,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채팅앱을 행정적으로 제재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1. 행정적 제재 현황

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7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보호법 제9조와 이에 따른 시행령 제9조의 [별표2]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지정하게 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에는 동법 제13조에서부터 제23조까지 ‘청소년유해매체 표시의무,’ ‘포장 및 포장에 준하는 조치 의무,’ ‘판매 금지 및 판매 전 나이 확인 의무’ 등 일정한 행정규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행정규제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45조의 시정명령, 제54조의 과징금 등의 행정벌이 가능하며 제58조, 제59조에 따라 형사처분 또한 가능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p>제2조(정의) (중략)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p> <p>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p>
<p>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u>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u>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심의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매체물 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중략) <p>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된 매체물 2. 매체물 각각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 <p>⑥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결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기준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9조 관련)

1. (중략)

2. 개별 심의 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매춘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 하는 것
-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의 효과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

6.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인 경우: 해당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포장 의무)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장할 수 없는 것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그 밖에 포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대표자명·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1.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경우
-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정보 공표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시정명령)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징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제2호사목·아목에 따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매체물을 제13조 및 제14조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일 때에는 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중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생략)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5조(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및 같은 호 자목에 따른 전자출판물 등 전자적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제공되는 매체물의 정보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 그 밖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랜덤 채팅앱 중 대부분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행정규제 적용대상으로 구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가 게시한 고시목록⁵⁾에 따르면 2016년 7월 6일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애플리케이션 항목의 461개 앱 중 단 6개만이 랜덤 채팅앱으로, 이를 고려해보았을 때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중개에 악용되고 있는 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관련 행정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문제가 되는 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앱 개발 및 등록·운영과정의 특성상 별다른 제약 없이 유사한 대체 앱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채팅앱을 만들어 청소년보호법상의 행정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존과 같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5)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인터넷/애플리케이션) 고시목록(2016년 7월 6일 기준)

나. 매체물 등급 구분제도

랜덤 채팅앱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행정제재 방안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의 ‘매체물 등급 구분’이 있다. 2015년 6월 22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해서 청소년의 나이별 이용 가능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매체물 등급 구분’

제8조(등급 구분 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매체물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8조(등급 구분의 종류·방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별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9세 이상 가: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2. 12세 이상 가: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3. 15세 이상 가: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정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앱의 경우, 온라인 게임 앱 이외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관련 심의기관에서 따로 연령 구분을 하지 않고 등급구분에 있어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운영자에 의한 사업자 자율규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매체물 등급 구분제도가 랜덤 채팅앱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다. 경고문구 게시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규제 외의 또 다른 행정 제재 수단으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경고문구 게시’가 있다.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특정 문구를 디지털콘텐츠에 게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동법 시행령 제12조 기준에 따라 고시된 디지털콘텐츠의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그러나 경고문구 게시 의무 부과 대상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디지털콘텐츠로서 여성가족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채팅앱 중 대부분은 게시 의무 부과 대상으로 구분되지 않게 된다. 게시 의무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부과 대상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상당수의 랜덤 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지정조차 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볼 때, 성매매의 불법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이러한 채팅앱에 게시하도록 강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p>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및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내용, 크기, 게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디지털콘텐츠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특정 또는 익명의 이용자 간 대화기능이 있을 것.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 설치·운영하는 디지털콘텐츠는 제외한다. 2.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에 의한 대화기능이 있을 것. 다만, 음성 대화기능만 있는 디지털콘텐츠는 제외한다. 3.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할 우려가 있을 것 <p>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게시물의 내용, 크기, 게시 방법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p>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위반 시 효과
<p>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32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라. 「청소년보호법」 제4조 등 그 외 관련 규정

그 외 관련 규정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제4조(사회의 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면서, 제2항에서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관련 규정
<p>제4조(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 등에 신고·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p>②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p>

그러나 위 조항은 별도의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내용상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 그쳐 실질적인 규제방안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2. 개선방안

현재 온라인 조건 만남을 유인하는 채팅앱 중 상당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령 등급제도의 적용도 받고 있지 않다. 문제가 되는 채팅앱의 성격 및 운영방식과 공유되는 정보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채팅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부정할 여지가 없으며, 아울러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랜덤채팅문화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랜덤 채팅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자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은 개별심의기준을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⁶⁾. 따라서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고문구 게시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또한 요구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경고문구 게시대상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한정된다. 여성가족부에서 위 규정을 입안할 때는 경고문구 게시대상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디지털콘텐츠에 한정하지 않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내용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면 모두 게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나,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검토과정

6)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서비스 중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의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를 ‘인터넷서비스 중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48호)’에서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50호)’로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인 조건 만남을 유인하는 대부분의 랜덤 채팅앱은 여전히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은 채 활발하게 운영 중이고, 따라서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에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에서 규제 남용 및 온라인 디지털업계 종사자의 영업활동 위축 등의 우려로 대상 범위가 축소된 바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랜덤 채팅앱은 일반인도 명백하게 해당 앱이 청소년성매매를 유인·알선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 규제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업계의 영업이익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방지라는 사회적 가치의 비교는 따로 논할 실익조차 없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청소년성매매를 유인하는 대부분의 랜덤 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닌 경우에도 성매매방지법 시행령상의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경고문구 게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민희 외 13명의 의원은 2013. 1. 23.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제공되는 ‘랜덤 채팅’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이용제한 및 성인인증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⁷⁾을 발의하였다.

위 개정 법률안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제공되는 랜덤채팅 디지털콘텐츠의 예에서와 같이 청소년들의 보호에 관한 기술적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통되거나 그 보호조치가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일부 콘텐츠에 관해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인증 등 기술적 조치를 강제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분야의 콘텐츠제작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제한 및 성인인증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안 제28조의 2 및 제42조의 2 신설)⁸⁾.

8) 개정안 제28조의2(청소년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분야의 콘텐츠제작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제한 및 성인인증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의2(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⁹⁾에서 개정안의 규제 범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는 범위와 일부 중복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1) 앱은 게임물이나 영상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등급분류 대상이 아닌 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은 관련 내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 법령을 근거로 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랜덤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팅앱은 다른 법령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채팅앱과 같은 형태의 디지털콘텐츠는 다른 법령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적 개념 문구를 더 명확하게 수정하여 문제가 되는 랜덤 채팅앱에 ‘성인인증 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스마트폰 앱 중 게임 앱의 경우에만 연령등급 구분제도가 적용되고 있고, 게임 앱이 아닌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업계 자율에 의해 등급이 구분되고 있는 상황이다¹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 규제를 하고 있지만 모바일 앱의 수가 점차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모든 앱에 대하여 심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어도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명백한 랜덤 채팅앱과 같은 스마트폰 앱에 대해서는 연령등급 구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9) 제320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2013.12.9.

10) 게임 앱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GRAC)의 사전심의를 거치지만, 그 외 앱은 사실상 개발자 의지에 따라 등급 구분이 이루어짐.

IV. 결어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아동은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국은 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제19조), 아동을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4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이 채택한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 규제에 관한 선택의정서”에서는 아동을 경제적 착취, 교육에 방해되는 일,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협약 제32조), 성 착취와 성적 학대(제34조), 약취·유인·거래(제35조), 그리고 아동 복지의 모든 측면에 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착취(제36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아동의 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엔 특별보고관이 2014년에 작성한 “인터넷과 아동성매매에 관한 보고서¹¹⁾”에서는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아동 성매매 문제의 양상과 그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이용자 및 서비스·정보 제공자뿐만 아니라 앱 개발자와 정보통신 산업 관계자 모두가 온라인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사회적 책임을 가지며, 모바일 앱이 성적 학대와 성 착취의 도구로 기능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스마트폰 랜덤 채팅앱이 조건만남을 위한 통로로 유용된 지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이 이제는 어느덧 하나의 음성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고 성 착취 및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랜덤 채팅앱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Maud de Boer-Buqucchio,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4.12.22.

비록 채팅앱 형식 그 자체는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랜덤 채팅앱은 아동·청소년을 성산업으로 유인하고 성구매자들에게는 성매매를 알선 또는 중개해주는 무형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계속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 자체에 대하여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그러한 방관의 주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해당 문제 확산 및 피해자 양산과 관련하여 부작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제44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¹²⁾,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앱 집중단속¹³⁾ 결과’ 위반사범 총 8,502명(1,972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청소년 대상 성매매 위반사범은 419명(168건)으로 그 중 상습적인 성매매 알선 업주 41명은 구속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앞으로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관계 부처가 채팅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및 유인행위의 증가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것은 고무적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집중단속 결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419명 중 그 위반 유형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유인한 행위(동법 제13조 위반)인 경우가 340명(139건)으로 가장 많다는 점은, 그동안 이러한 단속과 같은 대응이 채팅앱 그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성구매자를 검거하는 위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장기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유인한 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단속 및 처벌이 청소년성매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인 대처에 불과하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게시판처럼 공개된 영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 있지만 랜덤 채팅앱은 개인 간 주고받은 대화이기 때문에 심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채팅앱을 통해 이루어진 대화를 심의·규제하는 데에

12) ‘제44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개최’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2016.6.27.

13) 집중단속기간 : 2016.2.22.~ 2016.5.31.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후규제 및 범위반 단속의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랜덤 채팅앱 자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규제 강화는 여전히 시급한 상황이다.

온라인 조건만남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악용되고 있는 채팅앱을 근절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의 마련이 조속히 요구되는 바이다.

토론문. 1

아동학대·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처벌 강화해야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도 신고의무 기관으로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아동학대·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처벌 강화해야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도 신고의무 기관으로

이현숙 탁틴내일 ECPAT KOREA 공동대표

발제를 들으면서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가 도가 넘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이나 판결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에 대한 사회의 감수성이 떨어짐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가출함 재워줄 사람’이 성매매를 하겠다는 의사로 확인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의 취약함을 이용하여 성적인 목적을 취하고 그 책임을 미성년자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진단서도 안 끊어주는 사회에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스스로 성적 의사를 결정했다고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으면 결혼도 못하고 핸드폰 계약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대가에 상관없이 성인이 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에 우리 사회가 합의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기술과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자들의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데 법은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분 발제자의 제안에 동의하며 몇 가지를 첨언하고자 합니다.

1. 대상 청소년 조항 삭제

발제자도 이야기하였듯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매매 청소년을 성매수의 대상이 된 청소년으로 분류하여 보호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 법이 범죄 억제 효과를 가지려면 높은 형량도 중요하지만 처벌의 즉시성과 확실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즉시 반드시 잡혀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거라 생각하면 함부로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법을 어겼어도 잡힐 확률이 적거나 잡혀도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적다면 범죄 억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성매매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드러내야 하는데

잘 곳을 구했다거나 모텔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쉽게 판단해 버리는 상황에서 아청법의 ‘대상청소년’ 조항은 성매수자나 알선자가 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경찰 단속으로 검거해도 성매매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청소년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로 법적인 지위를 바꿔 성폭력 피해자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를 성폭력 범죄와 기타 범죄로 구분하고 있는 아청법 체계를 변경하여 성폭력 성매매 아동이용음란물 모두 성착취 피해자로 개념을 변화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신고 의무 제도 도입

김수연 변호사님이 발제한 것처럼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의 의무에 아동이용음란물 관련하여 즉시 삭제, 전송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 이용자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하는 미성년자의 성적인 착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에 신고하면 삭제하거나 애매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끝날 수 있으며 조진경소장님의 발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온라인을 매개로 일어나는 성적 착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아동이용음란물 뿐만 아니라 성매매, 성매수 유인행위, 그루밍 등으로 확대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착취 혹은 착취를 목적으로하는 그루밍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서비스제공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조치에는 화면 캡처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3자가 목격한 경우에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감시망을 확대해야 합니다.

3. 수사 방식 개선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 개입할 수 있고 여성이라고만 성적인 제안을 쉽게 할 수 있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도 유도 수사 도입이 필요합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유도 수사는 마약수사에서 활용하고 있고 범죄의 심각성을 본다면 마약 보다 아동대상 성범죄가 더 중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매수자를 대상으로한 유도수사에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이용한 함정수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살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가해자 혹은 행위자를 대상으로하는 유도수사에는 반대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함정수사를 하는 것은 관행으로 용인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감수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았는지를 검찰에서 입증하도록 되어 있어 매수자가 몰랐다고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입증 책임을 검찰이 아닌 매수자에게 둘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4. 조기 발견 개입을 위한 상담·구조·지원 기능 강화

조진경 소장님이 제안한 것처럼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구조 등의 서비스 체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청소년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만들어 성매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전문인력에 의한 상설적인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실시와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5.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아동학대, 인신매매로 개념 확대

관악에서 살해당한 여중생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자발적으로 온라인에 접속하여 개인 간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모집 알선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인신매매입니다.

UN인신매매방지 선택의정서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아동은 위협이나 무력, 사기, 강박, 기만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5년 비준하였으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의정서에 의하면 관악에서 발생한 여중생 살해사건의 알선자는 인신매매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발효일 2015.12.5] [국제연합(UN), 제2259호, 2015.11.25.]

제3조 용어의 사용

이 의정서의 목적상,

가.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착취는 최소한, 타인에 대한 매춘의 착취나 그 밖의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강제고용, 노예제도나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또는 장기의 적출을 포함한다.

나.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 중 어떠한 것이든 사용된 경우에는,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의도된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는 그것이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 중 어떠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라.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UN선택의정서가 아니라도 형법에 의한 인신매매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발생하는 사건 중에는 아동학대로 처벌 가능한 사건도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들과 국제 조약들을 검토하여 성적인 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노르웨이,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르딕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성매매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보호장치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인 여성들도 안전할 때 아동·청소년들도 안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상품화, 성매매, 몰래카메라 시청 등에 관대한 문화가 사라지고 누군가의 성적 욕구 해소에 사람이 희생당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는 성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토론문.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채팅앱의 규제
: 기술적 관점

이해영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채팅앱의 규제 : 기술적 관점

이해영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최근 스마트폰 채팅앱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성범죄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채팅앱은 익명 기능, 대화 내용 삭제 기능, 화면 캡처 방지 기능 등의 제공을 통해, 피해자의 신고 및 사건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채팅앱에 대한 청소년 사용 제한 등의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 표시의무, 포장 및 포장에 준하는 조치의무, 판매 금지 및 판매 전 나이 확인 의무 등 일정한 행정규제가 적용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거나, 청소년의 나이별 이용 가능 등급을 정하는 등급제를 채팅앱에 적용하고, 채팅앱 운영자에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성범죄 등을 암시하는 정보의 발견, 전송중지, 중단 등에 관한 의무를 지우는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에서, 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이나, 등급제 적용과 같은 규제의 '즉각적 시행'에는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채팅앱은, 영상물, 게임 등과 같은 '콘텐츠'라기 보다는, 일종의 '미디어'로 볼 수 있으며, 대체가 용이하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채팅앱들에 대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외 계정을 간단히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서 유통되는, 국내 법,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채팅앱을 자유롭게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해외 앱 마켓¹⁾에 대한 접근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²⁾, 사용자가 앱 파일 자체(.apk 파일)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 및 사용함으로써 이를 우회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³⁾.

1)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등

2) 애플 아이폰의 경우에도, '탈옥' 등을 통해 앱 파일 자체를 설치할 수 있다.

3) 이 경우, 설치하려는 .apk 파일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악성코드 감염, 개인정보 유출 등

한 예로, (채팅앱은 아니지만) 현재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은 포켓몬 고(Pokemon Go)의 경우, 국내 사용자가 해외 계정을 통해 설치하거나, 앱 파일 자체를 다운로드 및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⁴⁾. 그러므로 (게임 등에 비해 매우) 대체가 용이한 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및 등급제 적용의 ‘성급한’ 시행은, 청소년들을 포함한 국내 사용자들을, 국내 법, 제도에 의한 규제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밀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이나 등급제 적용이 불필요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또는 등급제 적용을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보완 기술의 연구, 개발을 선행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채팅앱을 이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현재 청소년가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등 차단앱’과 연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차단앱들의 기술적 한계 및 문제점을 분석해야 하며⁵⁾, 앞서 언급한 문제를 포함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는 등이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차단앱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차단앱의 오동작 등의 경우에 보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불법, 유해 정보(사이트)를 차단⁶⁾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전기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 단에서 청소년가입자의 채팅앱 트래픽을 차단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 앞서 언급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 이후, 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또는 등급제 적용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등 차단수단(앱)

(제37조의8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7 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 체결 시
 -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그리고 채팅앱 운영자에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성범죄 등을 암시하는 정보의 발견, 전송중지, 중단 등에 관한 의무를 지우는 방안의 경우, 국내 운영자에게만 의무를 지울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그러나 국내 앱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채팅앱의 운영자에게 해당 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렵기에⁷⁾, 의무 부과가 국내 운영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채팅앱 운영자가 영세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채팅앱은 (다른 직업을 가진) 개인 개발자가 혼자서 충분히 개발 및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유해 정보의 발견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앱 시장의 특수성과, 채팅앱의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영자 의무를 정하고, 부과할 필요가 있다.

7) 적발 시, 앱 마켓에 삭제를 요청할 수는 있다.

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4) 다른 예로, 앱 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차단되었던 기간 동안(~2011년), 많은 국내 사용자들이 해외 계정을 만들거나, apk 파일을 설치하여 게임에 접근하였다.

5) 예를 들어, 캐나다 비영리 연구단체인 시티즌랩은 “(차단앱인) 스마트보안관 앱을 해킹하면 스마트폰의 전화번호, 생일, 웹브라우저 방문기록 등을 손쉽게 빼돌릴 수 있다”고 지적한 사례도 있다.

6) <http://www.warning.or.kr/>로 포워딩

마지막으로, 일부 채팅앱이 제공하는 익명, 대화 내용 삭제, 화면 캡처 방지 등의 기능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성범죄 사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 기관에 전담 기구, 인력, 예산, 그리고 진정성이 확보된다면, '방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익명성을 제공하고, 흔적을 완벽하게 삭제할 수 있는 채팅앱을 만드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⁸⁾.

8) 채팅앱 자체가 완벽한 익명성과 기록 삭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체제, 네트워크 장비 등에 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

토론문. 3

온라인 청소년 성범죄 피해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한명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장)

온라인 청소년 성범죄 피해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16. 9. 5., 한명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장)

□ 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건전하고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음란·성매매 등 각종 불법·유해정보가 범람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및 애플리케이션 이용확대,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더욱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인터넷상의 성매매·음란, 성폭력, 선정·폭력, 잔혹 등 불법·유해한 내용으로부터 청소년 및 이용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
- 특히, 초연결사회로 접어들면서, 빠른 전파성, 저비용성 등의 특성에 따른 효과 및 영향력이 지대해지고 있는 유·무선 인터넷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 사이버상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및 지원 방안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 정서적·감성적인 호소에 상당부분 치중하면서, 성범죄 규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음
- 인터넷상의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 기술적 방안 등을 마련하여, 인터넷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인터넷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함
- 그런 의미에서, 금번 토론회는 현실적인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됨에 따라, 정책설정 및 실무집행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이 내용은 토론자의 개인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인터넷 특성상 성범죄 규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 인터넷은 정보량이 대량화되고, 복합매체성격이 강하며, 신속하게 전파되고, 모든 연령층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음
- 인터넷상의 성범죄 정보 등 불법·유해콘텐츠 및 플랫폼 등의 형태 및 내용이 수시로 변동하고, 인적·지역적 구분이 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됨
- 인터넷(채팅앱, 개인 인터넷방송, SNS 등)에 대한 규범적·사회적 가치판단 기준, 법적 개념 및 규제 대상, 범위가 불명확함

※ 인터넷 유해 콘텐츠 규제 자체를 위헌적 검열로 보며, 행정적 규제를 반대하는 주장이 존재하는 등 부단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음
 ※ 불법·유해정보의 광범위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의 부조화 고려

- 현행 법체계 및 규제시스템상 광범위한 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에는 기능적·조직적 차원에서 한계가 있음
 - 새로운 기구 필요성, 획기적인 인식 전환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있으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 없으며, 기존 규제시스템과의 충돌에 따른 법적 제도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현저함
 - “수시로 변화하는 통신분야의 규제 수단을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2002. 6. 27. 99헌마480)”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및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두 발제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발제 1]에 대하여,

- 정서적인 입장에서, i)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례, ii) 성매매 관련 인터넷사이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현황, 그리고 iii) 성착취 범죄 예방과 대책 등에 대하여 대체로 공감함
- 익명성에 대한 폐해에 대하여 제한적이거나 공직선거법과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실명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성인인증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개인 스스로 자신의 대화 내용을 저장 및 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운영방식의 변화에 따라, 신고기능(버튼 형태 등) 강화, 포인트 사용을 위한 충전·환전의 제한 등도 고려해 볼 대상임

○ [발제 2]에 대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 종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다른 법률과의 균형성을 유지하고, 현실과의 괴리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전적으로 동의함

- 채팅앱에 대한 포괄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경고문구 게시대상 확대, 연령등급 구분제도 적용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큼

□ 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합니다.

- 인터넷업체, 스마트폰업체, 채팅앱 개발자 등의 자체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규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특히, 업체 및 앱개발자 등에 대한 자율규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자율규제 시스템의 성숙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시민단체 등 민간영역의 자율규제 기관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해 규제기준 제시, 운영방안 개선 등 청소년 성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범람을 막고, 건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균형있는 조화가 필요합니다.**

※ 자율규제 기관의 범람을 지양하면서, 관련 단체간의 정례적인 대표자 모임,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각 분야별 역할 범위를 일정정도 확정하는 등 효율적 협력 방안을 모색함

·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 확보 등 초기 기반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함

- 「청소년 보호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정부는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팅앱 개발자,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 콘텐츠의 관리·운영자, 제작자, 유통행위자 및 관련 단체에 교육 및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 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① 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홍보, ② 자율규약의 제정·개정 등의 지원을 함
- 공적규제 및 자율규제 기관간 지속적이고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업계의 자체심의 및 사전심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자율심의를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도함
 - 인터넷업체, 사업자단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온라인 청소년 성범죄 피해 구제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업무 협력논의의 기회를 확대함

□ **법적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온라인 청소년 성범죄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함
 - 모니터링 단체 등과의 연계 강화는 물론, 위원회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성매매·음란 심의현황>

(단위 : 건)

성매매·음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
심의	10,667	15,076	34,634	53,985	55,906	26,619
시정요구	9,343	14,085	32,330	49,737	50,695	24,572

- 매년 성매매·음란 불법정보의 심의·시정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점점 지능화·음성화되고 있어, 심의가 용이하지 않음
- 해당 정보의 불법성 또는 유해성을 판단할 때에는, 표현형태,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현황>

<기간 : 2015. 1. 1. ~ 2016. 7. 31. / 단위 : 건>

연도	위반유형	심의	심의결과			
			시정요구	자율규제 권고	해당없음	각하 등
'15	도박	45	44	-	1	-
	성매매·음란	140	12	-	128	-
	권리침해	2	-	-	2	-
	기타 법령 위반*	70	25	-	45	-
	계	257	81	0	176	0
'16. 7.31.	도박	1	-	-	1	-
	성매매·음란	149	19	3	119	8
	권리침해	7	-	-	2	5
	기타 법령 위반	185	26	18	141	-
	계	342	45	21	263	13

※ 기타 법령 위반 : 욕설, 차별·비하 등

- 공적 규제를 담당하는 심의기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
 - 부처간, 심의기관간 업무충돌에 따른 갈등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토론문. 4

채팅앱 운영자 책임성 강화 필요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